

제 1626 호
1992. 1. 15

발행인: 서울특별시장 이 해 원
편집인: 공 보 관 이 상 진
전 화: 731-8111~3
인 쇄: 한국컴퓨터산업(인쇄)주식회사
전 화: 273-8111~3

시 보

차 례

제	내	쪽
제 2871 호	서울특별시외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	3
제 2872 호	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	5
제 2873 호	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개정조례	5
제 2874 호	서울특별시재정부용자기금설치조례	6
제 2875 호	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화조례개정조례	7
제 2876 호	서울특별시자랑스런운서민상및공무원상조례	7
제 2877 호	서울특별시도로수익차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	9
제 2878 호	지방공사장남병원설치조례개정조례	9

(이면계속)

영										
문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“모으면 자원, 버리면 쓰레기”

제 2879 호	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	9
제 2880 호	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	10
제 2881 호	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	10
제 2882 호	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	10
제 2883 호	서울특별시시경개발연구원육성조례	11

● 규 칙

제 2446 호	서울특별시관인규칙폐지규칙	12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

조 례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 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 다.

1992. 1. 15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71호

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개정조례

조례의 제명 중 "사무국"을 "사무처"로 한다.

제2조의 제명, 동조 제1항, 동조 제2항, 제3 조제1항 및 제4조 중 "사무국"을 "사무 처"로 한다.

제2조제2항 및 제4항 중 "사무국장"을 "사 무처장"으로 하고,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사무처장은 지방관리관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"의안업무 조정"을 "의안업 무의 진행조정"으로 하고, 제2호 내지 제 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2. 위원회 의사일정 종합·봉지, 격의 준 비 및 의사진행 지원
- 3. 진정서의 처리
- 4.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및 심사자료의 접수, 이송
- 5. 위원회 활동에 따른 일반 행정업무의 지원

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,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전문위원)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유

분장한다.

- 1. 의안의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
- 2.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
- 3. 의안·정원관련 자료의 수집, 연구·검토
- 4. 소관위원회 지시사항 처리

제4조 관련 (별표)의 제목 중 "사무국"을 "사무처"로 하고, 일반직 직급란 중 "2·3"을 "1"로 하고, 동 정원란 "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"을 "지방관리관"으로 하며, 일반직 7급 정원란 "13"을 "24"로 하고, 동 정원 내용란의 지방행정주사보 "11"을 "22"로 하며, 일반직 정원란의 "57"을 "68"로 한다.

법정직 5급란 다음에 7급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	4	지방법정직 7급 상당 (권집요원 2, 속기요원 2)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법정직 8급 정원란 "1"을 "10"으로 하고, 동 정원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방법정직 8급 상당(의장비서 1, 권집요 원 2, 속기요원 7)

9	4	지방법정직 9급 상당 (속기요원) 4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기능직 8등급 정원란 "7"을 "3"으로 하고, 동 정원내용란의 "지방사무보조원(조무) 4"를 삭제한다.

기능직 9등급 정원란 "4"을 "2"로 하고, 동 정원내용란의 "지방사무보조원(조무) 2" 를 삭제한다.

기능직 10등급 정원란 "36"을 "45"로 하고, 동 정원내용란의 지방기계원 "1"을 "2" 로 하고, 지방사무보조원(조무) "10"을 "18"로 하고, 기능직 소계란 "52"를 "55" 로 하며, 총계란 "113"을 "144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별표〉			
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지방공무원정원표			
직	급	정원	정 원 내 용
일반직	1	1	지방관리관
	4	13	지방서기관 3,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직 4급상당 10
	5	9	지방행정사무관 8, 지방기계기과, 지방전기기과 또는 지방건축기과 1
	6	15	지방행정주사 13, 지방통신기사 1, 지방임업기사 1
	7	24	지방행정주사보 22, 지방건축기사보 1, 지방기계기사보 또는 지방전기기사보 1
	8	6	지방행정서기 5, 지방사서서기 1
	소계	68	
별정직	4	1	별정직 4급상당(의장비서관) 1
	5	2	별정직 5급상당(부의장비서관) 2
	7	4	별정직 7급상당(편집요원 2, 속기요원 2)
	8	10	별정직 8급상당(의장비서 1, 편집요원 2, 속기요원 7)
	9	4	별정직 9급상당(속기요원) 4
	소계	21	
기능직	6	2	지방기계장 2
	7	3	지방기계장 1, 지방전기장 1, 지방통신장 1
	8	3	지방기계원 1, 지방기계원(영사) 1, 지방전기원 1
	9	2	지방교환원 1, 지방운전원 1
	10	45	지방기계원 2, 지방전기원 1, 지방통신원 1, 지방기계원 또는 지방전기원 2 지방건축원 2, 지방사무보조원(조무) 18, 지방사무보조원(타자) 8, 지방방호원 7, 지방운전원 4
	소계	55	
총	계	144	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.15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72호
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
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조례와규칙공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얻은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다만 규칙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

1992. 1.15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73호
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예산편성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예산편성, 심의확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예산편성지침)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내무부장관이 시달하는 익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매 전년도 9월 10일까지 예산요구기관에 세부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.

제3조(예산의 요구 및 편성) ①서울특별시본청 각 국장 및 사업소장은 매 전년도

9월 30일까지 소관별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산편성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
가. 기본계획서

나. 소요자금 및 연도별 재원조달계획다. 사업의 효과 분석

2. 사업별 우선순위 작성

3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5호 내지 제11호에서 정하는 서류

②시장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, 계속비, 명시이월비와 세무부담행위에 관한 예산을 편성한다. 특히, 사업예산편성의 경우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의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

제4조(예산안 제출등) ①시장은 제3조에 의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예산안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5조(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) 시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.

- 1.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
- 2.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
- 3.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재정부용자기금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.15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74호

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그 운용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의 재원) ①기금은 다음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
2.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·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이나, 서울특별시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으로부터의 예수금
3. 실시목적에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출연금(현물출자를 포함한다)
4. 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
5.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
6.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
7.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
8.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출연금

②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제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.

제3조(기금의 용도)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지하철·도시고속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용자
2. 상수도사업 특별회계·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및 타기금에 대한 용자
3. 구·동청사, 구민회관 등 자치구의 영

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용자

4.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금 용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용자
5. 지방채·예수금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원리금 상환
6. 기타 기금의 운용·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

제4조(기금의 운용·관리)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·관리한다.

②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조(특별회계 등의 여유자금의 우선예탁)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및 기금은 당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1년 이상의 여유가 있는 자금들이 기금에 예탁할 수 있으며, 당해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기금의 총지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탁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.

제6조(설치목적에 달성된 특별회계 등의 잉여금 및 현물의 출연·출자) 설치목적에 달성된 특별회계나 기금의 잉여금 및 현물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.

제7조(자치구로부터의 예탁 및 적립) ①자치구는 자치구의 기본재정수요에 충족하고 여유가 있는 재원의 일부를 자치구 회의의 의결을 얻어 기금에 예탁 또는 적립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되거나 적립된 재원은 자치구의 영선사업 비용으로만 이를 용자할 수 있다.

제8조(지방채의 발행) ①시장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

의회의 의결을 얻어 기금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 ②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제9조(재정부용자기금융영심의회의 설치)

①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정부용자기금융영심의회의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기금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2. 기금의 용자대상사업의 선정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
3. 이자율·상환방법 등 용자조건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사항

②심의회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③심의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.15

서울특별시정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75호

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

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 중 "예산회계법시행령 제95조의3 제3항"을 "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2조제5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.15

서울특별시정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76호

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

공무원상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 등에게 자랑스러운 시민상(이하 "시민상"이라 한다)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상(이하 "공무원상"이라 한다)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수상대상) ①시민상의 수상대상은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, 소재하고 있는 시민 및 단체에 한하며, 공무원상 수상대상은 3년 이상 서울특별시 분청, 자치구 및 그 산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과 기관에 수여한다. 다만,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②서울특별시 무차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대하여는 중구일상에 준한다.

제3조(시상시기) 이 상은 정기적으로 매년 상·하반기 2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.

제4조(상의 종류 및 인원)

①시민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지역사회 발전 부문
2. 시민화합 부문
3. 사회질서 확립 부문
4. 미풍양속 부문
5. 근검결약 부문

②공무원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

1. 청렴 근검 부문
 2. 친절 봉사 부문
 3. 시정 발전 부문
 ③시민상은 연간 500명 이내, 공무원상은 연간 200명 이내로 하되 부문별 수상인원은 시정이 따로 정한다.

제5조(표창권자) 이 상은 서울특별시장이 행한다.

제6조(시상품 및 시상금) ①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메달을 수여하고 기장 또는 뱃지를 수여할 수 있다.
 ②제1항의 시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상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이 상의 수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당스러운 시민상 및 공무원상 공적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내지 15인으로 한다.
 ③위원은 서울특별시 내무국장,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세계 저명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④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이외의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위하여 간사를 둔다. 간사는 서울특별시 인사과장과 행정과장이 된다.
 ⑥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 결정권을 가진다.
 ⑦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견을 할 수 있다.

제8조(수상 후보자 추천) ①시민상 후보자는 정부 및 서울특별시 산하기관에 등록된 시민단체 그 하부조직,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이 관한 구청장을 거쳐 추천한다. 다만, 공무원상은 본청국장, 시의회

사무국장, 3급이상 소속 행정기관의 장, 시투자기관 사장, 구청장이 추천하며, 시민단체 및 시민이 추천할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행한다.
 ②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)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감사관실에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상자 결정) ①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 ②위원회는 심사는 추천서,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,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이중표창의 금지 등) ①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.
 ②시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수상자가 될 수 없다.

제12조(상의 대리수상) 이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.

제13조(수상자 사후관리) ①수상 시민에 대하여는 시정보고, 시정시찰, 각종 행사 등 우선초청,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예우하여 인정감 부여 및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.
 ②수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.
 ③수상자 기록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한다.

제14조(수당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

다.
 제15조(위원회의 규칙) 위원회는 이 규정 이외에 공적심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.
 제16조(위임규정)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규정) 서울특별시통만장모범시면포창기준에 관한 규정과 서울특별시시민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. 15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77호

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

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도로수익자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. 15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78호

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

지방공사강남병원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다부층리”를 “대부층리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. 15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79호

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별표 근로자 후생시설 사용료 등의 구분란(근로자회관) 중 숙박란의 사용료를 “시중 여인숙 협정료의 1/10”을 “시중 여인숙 요금의 1/7”로, 비고란의 “여인숙 협정료 기준”을 “여인숙 요금 기준”으로, 숙박란의 “후생시설요금의 1/5”을 “후생시설 요금의 2/5”로, “복합란”의 “시중 협정료의 1/5”을 “시중요금의 1/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. 15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80호

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 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중 “국무총리의 승인”을 “내무부장관의 승인”으로 한다. 제4조제1항 중 “1조5,000억원”을 “2조4,000억원”으로 한다. 제5조제2항 중 “국무총리의 인가”를 “내무부장관의 인가”로 한다. 제8조제1항 “국무총리의 승인”을 “내무부장관의 승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. 15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81호

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정수조례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2항 중 “7일 이내”를 “15일 이내(은행납입 경우에는 20일 이내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. 15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82호

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

제1조(설치목적) 이 조례는 쓰레기 및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 소속하에 서울특별시

청소사업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본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청소행정의 종합기획
2. 인력 및 장비관리
3. 쓰레기수거, 자원재활용의 추진
4. 청소관련시설의 종합건설 및 관리계획 수립
5. 쓰레기수거, 위생매립, 소각처리기술개발, 자원재활용 등의 연구
6. 기타 청소관련 업무

제3조(본부장) ①본부에 본부장 1인을 두되, 본부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.

②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본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며 산하사업소를 지도·감독한다.

제4조(하부기관) ①본부장 밑에 청소연구소·난지도쓰레기 종합처리사업소 및 위생처리장을 둔다.

②청소연구소장은 지방시설부기감·지방공업부기감 또는 3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, 난지도쓰레기 종합처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위생처리장장은 지방기계기과 또는 지방화공기과로 하며, 본부의 기구는 별표와 같다.

제5조(공무원) 본부와 하부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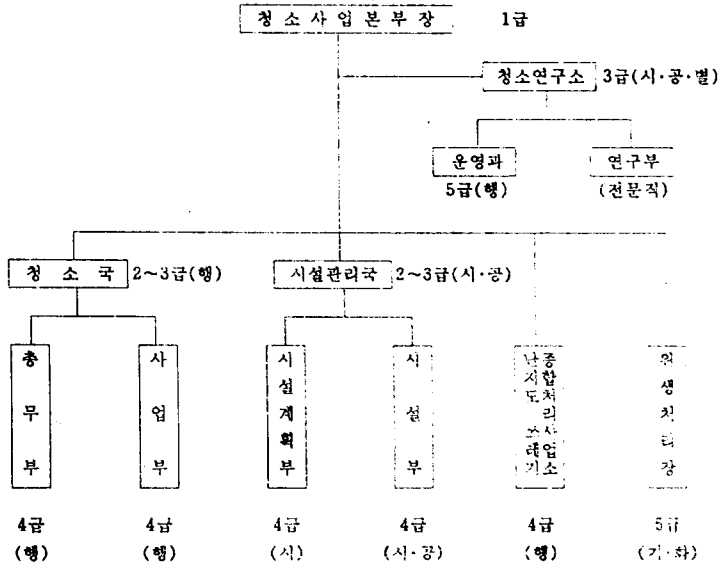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는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의하여 청소 1·2과가 폐지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폐지조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설치조례와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.

기 구 표

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. 15

서울특별시시장 이해원 ㉔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883호

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와 서울특별시 행정에 필요한 제반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을 보호, 육성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행정발

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금) ①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.

②제1항의 기금은 서울특별시(자치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.

제3조(출연금) 서울특별시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 기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한다.

제4조(연구·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) ① 서울특별시는 시정과 관련된 제반 연구·

조사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

②연구원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·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.

제5조(사업계획 등 승인)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6조(결산서 제출)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보고, 검사 등)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연구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8조(비밀엄수의 의무)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이나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조(시행규칙) 기금 및 출연금의 운용관리,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은 이 조례에 준거한 법인으로 본다.

③(기금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연구원의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

로 본다.

규 칙

서울특별시관인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1992. 1. 15

서울특별시장 이해원 ㉔

◎서울특별시규칙제2446호

서울특별시관인규칙폐지규칙
서울특별시관인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부 칙

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공인조례의 시행일부 터 시행한다.